

#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4. 7. 24.

제안자 : 오승철 의원

## 1. 수정이유

- 원안의 '대중교통수단'의 범위에 특별교통수단이 포함됨에 따라, 조례명과 후단의 관련 조문에 대한 용어 통일과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

나. 조문의 용어 통일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7조)

## 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## 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##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”을 “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대중교통수단”을 “시내버스등”으로, “대중교통비”를 “교통비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대중교통비”를 “교통비”로, “대중교통수단”을 “시내버스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대중교통비”를 “교통비”로 한다.

2. “시내버스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.

- 가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제1호,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
- 나. 「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교통수단

제3조제2항 중 “대중교통비”를 “교통비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대중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)”를 “(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대중교통비 지원에”를 “교통비 지원에”로,

“대중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”를 “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4호,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“대중교통비”를 각각 “교통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대중교통비”를 각각 “교통비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”를 “교통비 지원 사업의”로, “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”를 “교통비 지원 사업에”로 한다.

제7조 전단 중 “대중교통비”를 “교통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하남시</u> <u>어르신</u> <u>대중교통비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하남시</u> <u>어르신</u>의 <u>대중교통수단</u>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<u>대중교통비</u>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<u>대중교통수단</u>”이란 「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</u>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,</p>	<p><u>하남시</u> <u>어르신</u> <u>대중교통비</u> <u>지원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대중교통수단</u>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<u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</u>」 제7조</p>	<p><u>하남시</u> <u>어르신</u> <u>교통비</u> <u>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시</u> <u>내버스등</u> ----- ----- ----- <u>교통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시내버스등</u>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<u>여객자동차</u></p>

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,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3. “대중교통비 지원”이란 제2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교통카드”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

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,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  
나. 「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교통수단

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제1호,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  
나. 「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교통수단  
3. -----  
-----교통비 -- 시내버스  
등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4. -----  
----- 교통비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한 카드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

- ① (생략)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대중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)

- ①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~ 3. (생략)
  - 4. 그 밖에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하여

-----  
-.

제3조(시장의 책무)

- ① (현행과 같음)
- ② -----  
-- 교통비 -----  
-----  
-----.

제4조(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)

- ① -----  
--- 교통비 지원에 -----  
-----  
----- 교  
통비 지원 심의위원  
회-----  
-----.
- ② -----  
-----  
--.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----- 교통비 -----  
-----

시장이 필요하다  
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 
과 부위원장 각 1명  
을 포함하여 13명  
이하의 위원으로 구  
성하며, 대중교통비  
지원 심의가 끝나면  
자동 해산한다.

④·⑤ (생략)

⑥ 위원회의 원만한  
사무 처리를 위해  
간사 1인을 두되, 간  
사는 대중교통비 지  
원 담당 팀장으로  
한다.

⑦·⑧ (생략)

제5조(지원대상) ①  
대중교통비 지원은  
지급 기준일 현재  
주민등록상 하남시  
에 거주하고 있는  
어르신을 대상으로  
한다.

-----  
-----

③ -----

-----  
-----  
-----

--- 교통비 -----

-----  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  
음)

⑥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교통비 -----

-----  
-----.

⑦·⑧ (현행과 같  
음)

제5조(지원대상) ①

교통비 -----

-----  
-----  
-----

-----  
-----.



조제3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.
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